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도내 탄소·수소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공고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기업지원을 안내하오니, 전북도 소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개 요

- 공 고 명 : 도내 탄소·수소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재권 강소기업 육성
- 공고기간 : 2025. 06. 02.(월) ~ 06. 15.(일)
- 지원대상 : 전북도 소재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업
- 지원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문 의 처 : 권규리 선임, 이윤아 선임
(☎ 063-219-3683, 3687)
- 접수방법 : gyupro@kcarbon.or.kr (e-mail 접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도내 탄소·수소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재권 강소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5. 01. 01. ~ 2027. 12. 31.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단, 실증 지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지원내용 : 상용화기술개발 실증,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국내외 인증 등 지원

2.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프로그램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예산 (기업당)	기업 부담금	
실증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실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B)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 협력을 통한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 현장실증(수요기업 직접참여) 및 수요확약 필수 • (B2G) 공공(부처, 지자체, 공기관 등)이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의 제품을 직접 수요로 하거나 공공이 수요창출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아이템 실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확약 또는 조달청 제품등록 및 인허가취득 필요 • (B2C) 민간부문에서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신규 성장아이템을 발굴해 수요처 실증을 통한 제품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C)제품 체험단 운영 등 현장 실증계획, 제품인증 및 인허가 취득 등 필요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현금 20% (필수)	
		지원유형			자유공모
		지원규모			연차별 최대 5천만원
		지원기간			2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0개월 총16개월)
		주관기관 자격			국내기업(법인사업자)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단, 신청자격 참조)
		과제구성 의무사항			수요기업 필수 참여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예산 (기업당)	기업 부담금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반의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술을 반영하여 제품 개발 	최대 20백만원	자부담 현금 20% 이상 (필수)
	지식재산권 / 국내외 인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 기반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지원 	최대 5백만원	

- ※ 지원내용,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미포함이며, 기업 별도 부담
-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프로그램 중 사업화 지원은 패키지 형태로 복수신청 가능
(ex : 시제품 제작지원+지식재산권/국내외 인증지원)

○ 지원방법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실증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 실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도 소재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상용화, 사업화에 필요한 제조 및 평가실증 분야 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실증지원 진행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 수요처 실증 및 즉시 사업화를 위한 수요기업 참여 의무 ② 관련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제출 ③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기업 선정(실증예산 확정) ④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⑤ 사업종료 전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 ⑥ 사업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는 1차년도 중간평가, 2차년도 최종평가 완료 후 총 2회로 나누어 지급예정 ⑦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회계정산 시 사업비 불인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수행기업이 전액 부담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p>시제품 제작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반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진행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기업-공급기업 매칭(필수, 공급기업 자율적 매칭) ② 관련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제출 ③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기업 선정(지원금액 확정) ④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비는 결과평가 완료 후 지급) ⑤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결과평가 ⑥ 사업비 집행 (공급기업에 사업비 지급) ⑦ 성과 및 만족도 조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회계정산 시 사업비 불인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수행기업이 전액 부담 </div>
	<p>지식재산 권/ 국내외 인증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외 지원분야 관련 공급기관(기업) 자율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 (공급기관(기업)은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 • 사업계획서 제출 시 특허사무소의 특허출원(등록) 종합의견서 제출 • 상시지원형태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내용,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대상 : “전북도 소재”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업

※ 지역특구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특구사업자(특구계획에 포함,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특구내 소재기업, 기관)

○ 신청 및 접수방법

-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www.kcarbon.or.kr) 사업공고 참조

○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 하단 제출자료 리스트를 1개의 파일로 통합 (순차적으로)
- 한글파일 원본 그대로 제출

지원기관	구분	지원 프로그램	제출서류
한국탄소 산업 진흥원	실증 지원	상용화 개발 실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회계사 직인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부 7.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9.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1부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11.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12.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협약서 1부 13. 수요기업 협약서 1부 <p>* 실증지원_관련서식 참고</p>
	사업화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시제품 제작지원</p> <hr/> <p style="text-align: center;">지식재산권/ 국내외 인증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신청서(양식1) 및 상세기술서(양식2) 1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3) 1부 3.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양식4) 1부 4. 기업부담금 출자 협약서(양식5) 1부 5. 청렴 서약서(양식6) 1부 6. 기관(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7)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최근 2년) 각 1부 8. 견적서 1부

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대상

- 전북도 소재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업

○ 실증 지원 신청제외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관계기업(지분보유율 20%이상)인 경우 및 동일지배주주(동일주주가 20%이상 주식보유)인 경우
 - * 위의 동일주주는 지배주주 개인, 지배주주 개인의 친인척을 포함하며, 동일주주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포함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 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현재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시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필요(외부감사인 의견 필수 포함)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현재 수행 중인 국가 R&D과제와 중복되는 과제의 경우
(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중복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과제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사업화 지원 신청제외대상

- 규제자유특구 특례 적용 실증품목이 아닌 사업신청은 선정에서 제외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사업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기술(부품)과 동일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과제 수행에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사업 성과 측정 및 결과보고에 지장을 초래하여 제외시킬 수 있음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기업

③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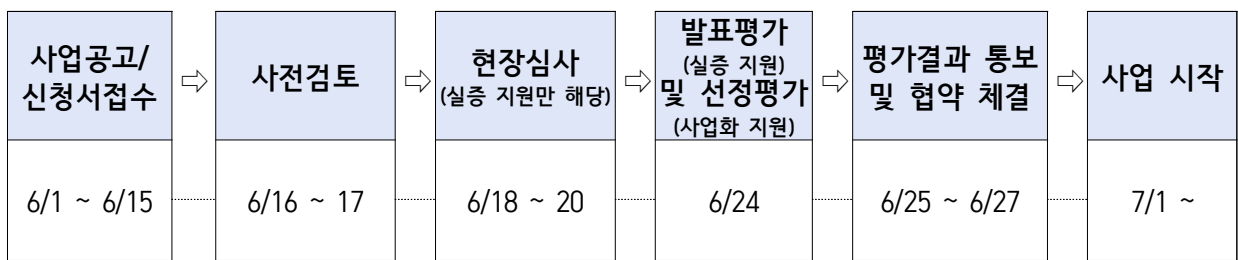
- 시제품제작 지원의 경우, 제작에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결정하여 견적서 첨부
 - 첨부한 견적서의 금액과 신청서에 작성한 사업비(예상 소요비)가 일치해야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시 유의 사항
 - 본 사업계획서 양식을 준용하되, 세부 추진계획 작성은 자율성 부여
 -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강제 협약해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 서류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별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용화기술개발 실증 지원의 경우,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진도점검·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4 실증·사업화 지원신청 및 평가 추진일정

○ 추진일정



※ 현장심사 : 소재부품·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필요 시 수요처의 의지 파악을 위하여 수요처 현장 확인 병행

*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적격, 미흡, 부적격) 및 심사의견 도출 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 발표원칙(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사업성 등)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프로그램에 따라 각 형태로 지원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예비진단(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반영,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지원금액, 기본방향, 사업내용, 공급기업 변경 등 일부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 후 조정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이메일 주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권규리 선임 (063-219-3683)	gyupro@kcarbaon.or.kr
	이윤아 선임 (063-219-3687)	